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학위논문

FTA직접운송원칙 위반에 관한  
사례 연구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임숙미

경영학석사학위논문

FTA직접운송원칙 위반에 관한  
사례 연구

지도교수 하 명 신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임 숙 미

# 임숙미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27일



위원장 경제학박사 하명신 (인)

위원 경영학박사 조찬혁 (인)

위원 경영학박사 이춘수 (인)

## < 목 차 >

표 목차 .....	iv
Abstract .....	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2
제2장 FTA의 일반적 고찰 .....	3
제1절 FTA의 추진 배경 .....	3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3
제3절 원산지 규정 .....	6
1. 필수 요건 .....	6
2. 원산지 결정기준 .....	8
제4절 선행 연구 .....	9
1. 직접운송원칙 위반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	9
2. 자유무역협정 요건별 위반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	9
제3장 FTA 직접운송원칙 .....	11

제1절	직접운송원칙의 요구 취지	11
제2절	직접운송원칙 관련 국내외 규정	12
	1. FTA 협정문	12
	2.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3
	3. 관세법	15
	4. 관련 규정 적용의 우선 순위	15
제3절	FTA 협정별 직접운송의 범위 및 입증서류 비교	16
	1. 협정별 직접운송의 범위	16
	2.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서류	26
<b>제4장</b>	<b>직접운송원칙 위반사례 및 시사점</b>	<b>33</b>
제1절	협정별 위반사례 및 분석	33
	1. 한·칠레 FTA	33
	2. 한·ASEAN FTA	37
	3. 한·EU FTA	45
제2절	모의 사례	48
	1. 운송 구간별 입증서류 제출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	48
	2. 역내 물품 반출 및 내수 통관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	48
	3. 제3국 보세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	49
제3절	시사점	49
	1. 단순 사실관계의 부인 및 입증서류의 필수 제출	49
	2.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서류의 사전 확인	50
	3. 운송 경로의 사전 확인 및 입증서류 사전 구비	51
	4. 보세창고도 거래(BWT)의 직접운송 인정 협정여부 확인	52
	5. 협정별 직접운송 요건의 동시 충족	54

제5장 결론 .....	55
제1절 연구 요약 .....	55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	56
참고 문헌 .....	58



## < 표 목 차 >

<표 2-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	4
<표 2-2>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7
<표 2-3> 원산지 결정기준 .....	8
<표 3-1>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	12
<표 3-2> 한·칠레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	16
<표 3-3> 한·싱가포르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	17
<표 3-4> 한·EFTA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	18
<표 3-5> 한·ASEAN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	19
<표 3-6> 한·인도 CEP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	21
<표 3-7> 한·EU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	22
<표 3-8> 한·페루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	23
<표 3-9> 한·미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	24
<표 3-10> 한·터키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	24
<표 3-11> 한·호주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	25
<표 3-12> 제3국 경유·환적, 보관 시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 요구서류 ..	26
<표 4-1> 제3국 경유·환적, 보관 시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서류 비교 ..	50
<표 4-2> 협정별 직접운송 및 직접운송 입증서류 규정상 BWT인정여부 ..	53



# A Case Study on Violation of the Direct Transport Rules of FTA

Lim Suk M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principle, FTA preferential tariff is applied to the originating goods only when the goods are directly transported to and from the FTA agreed parties.

FTA is a bilateral agreement which grants preferential treatment only to those agreed parties, so non-originating goods of non-FTA countries cannot and must not benefit from this preferential tariff.

In other words, if the goods are not transported directly, these goods must not enjoy the preferential tariff even though they are assumed to be FTA originating goods.

Most companies who take advantage of the FTA tend to have a misconception on the comprehensive principle behind origin of goods perceiving that the importance is limited to the place of origin and not the direct transport aspect of this requirement.

Furthermore, claims are made that originating goods are transported directly without substantiating evidence to support this claim.

All eleven FTA agreements made with Korea defines on Direct Transport Rules and supporting Documents to prove this.

In this study, the Direct Transport Rules and Documents of each FTAs are compared and arranged on the basis of written agreements. Also, appeal cases are collected as well as simulated cases are illustrated to aid the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of some assistance in preventing infringement on origin of goods and preferential tariff caused by violation of Direct Transport Rules and failure to submit Documents under post-verification.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물품이 협정 당사국 간에 직접적으로 운송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FTA가 양자 간 특혜무역협정이므로 경유 또는 환적국에서 비당사국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둔갑, 특혜 관세를 수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자유무역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물품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운송되지 않으면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지만 FTA 활용기업의 대다수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만 편중하여 인지하고 있고, 직접운송원칙의 요구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세관 당국의 원산지 지위 부인 및 특혜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2. 연구의 목적

첫째, 협정별로 정하는 직접운송의 경우 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정확히 인지하게 하고자 한다.

둘째, 협정별로 상이한 직접운송의 입증서류를 정리하고 단순 사실 관

계만으로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될 수 없음을 인지하게 하고자 한다.

셋째,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위반사례를 살펴보고 협정별 위반 판단의 기준을 분석 하고자 한다.

넷째, 특정 협정에서는 직접운송 미충족의 경우가 다른 협정에서는 충족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 비교를 통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연구자는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기에 우선적으로 일선 통관세관, 관세청, 조세심판원 및 행정법원 등의 심사·심판 사례와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 하였다.

분석 및 시사점 도출에 필요한 이론은 국내외 관련 학술문헌, 현재 발효 중인 각 협정별 협정문 및 국내 관련법령을 참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해석을 수행 하였다.

## 제2장 FTA의 일반적 고찰

### 제1절 FTA의 추진 배경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유럽연합(EU)의 성공으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이득이 가시화되고 WTO와 같은 다자무역체제가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02)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자유무역협정 확산의 세계적 추세에 순행 하였고, 이에 주요 지역 거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3년 한·터키 FTA 까지 현재 48개국과 10개의 FTA를 발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캐나다, 터키(서비스·투자협정), 중국, 뉴질랜드 및 베트남 6개국과의 FTA가 타결된 상태이다.

그 외 RCEP,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멕시코, 일본 등과는 협상재개 및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 표 2-1 >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발효 (10건)	칠레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최초 FTA,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ASEAN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시장의 교두보
	ASEAN (10개국)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효 (*ASEAN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8개국)	2007년 5월 협상 출범, 2009년 7월 협상 실질 타결,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2010년 10월 6일 서명,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 (*EU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세계최대 경제권 (GDP기준)
	페루	2009년 3월 협상 개시, 2010년 8월 협상 타결, 2010년 11월 15일 가서명, 2011년 3월 21일 서명, 2011년 8월 1일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미국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협정 서명, 2010년 12월 추가 협상 타결, 2011년 10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2011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3월 15일 발효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 기본 협정·상품무역 협정 > 2008년 6월~2009년 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0년 4월~2012년 3월), 2012년 8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2012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3년 5월 1일 발효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년 5월 한-호주 FTA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 (2009년 5월, 8월, 11월 / 2010년 3월, 5월 / 2013년 11월, 12월), 2013년 12월 4일 협상타결 선언, 2014년 2월 10일 가서명, 4월 8일 공식서명, 12월 2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12일 발효	자원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타결 (6건)	콜롬비아	2009년 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년 12월 / 2010년 3월, 6월, 10월 / 2011년 10월 / 2012년 4월), 2012년 6월 25일 협상타결 선언, 2012년 8월 31일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3년 2월 21일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 시장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05년 7월, 9월, 11월 / 2006년 2월, 4월, 6월, 9월, 11월 / 2007년 1월, 4월, 10월, 11월 / 2008년 3월 / 2013년 11월), 2014년 3월 11일 협상타결 선언 2014년 6월 12일 가서명, 2014년 9월 23일 정식서명	자원부국 및 북미 선진 시장
	터키	< 서비스·투자 협정 > 2013년 8월~2014년 7월, 서비스·투자협정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년 7월 서비스·투자협정 실질타결, 9월 가서명	유럽·중아시아 진출 교두보
	중국	2007년 3월~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12년 5월, 7월, 8월, 10월 / 2013년 4월, 7월, 9월, 11월 / 2014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13년기준)
	뉴질랜드	2007년 2월~20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년 6월~2010년 5월)후 잠정중단, 2013년 12월 3일 공식협상 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개최(2014년 2월, 3월, 6월, 8월, 10월) 2014.11.15 협상 타결 선언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1년 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년 8월 6일 협상개시 선언, 총 9차례 협상 개최(2012년 9월 / 2013년 5월, 10월 / 2014년 3월, 5월, 7~8월, 9~10월, 11월, 12월), 2014.12.10 협상 타결 선언	우리의 아세안 2위 교역국, 최대투자대상국(13년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www.fta.go.kr](http://www.fta.go.kr)), 우리나라의 FTA 현황

## 제3절 원산지 규정

### 1. 필수 요건

#### 가. 거래당사자 요건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수입자 및 생산자가 모두 FTA 협정 당사국에 소재 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출자는 거래계약의 일방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개념과는 달리, 협정 당사국에 소재하고 협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선적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산지 증명의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제3국 소재 자연인 또는 법인이 수출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영달, 2011)

만약 수출자가 협정 비당사국에 소재하고 생산자와 수입자가 협정 당사국에 소재하여 원산지 물품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생산자가 FTA에서 수출자가 된다.

#### 나. 품목 요건

협정국 간 거래되는 품목이라고 하여 모두 FTA 특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 품목에 한하여 정하는 수혜 시기에 해당 특혜가 적용된다.

#### 다. 운송 요건

운송 요건(직접운송원칙)이란,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이영달, 2011)



그러나, 예외적으로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이 입증되고 환적 과정에서 운송에 필요한 경미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이영수, 권순국, 2012)

#### 라. 절차적 요건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각 협정별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나 작성 주체, 발행 기관 등이 상이하므로 활용 하고자 하는 협정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표 2-2 >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발급 방식	자율 발급	기관발급	자율 발급	기관 발급	기관 발급	자율 발급	기관(5년)/이후 자율발급	자율 발급	자율 발급	자율(한국)/자율·기관 병행(호주)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상의)	수출자	*기관(페루: 통상관방부, 한국: 세관/상의) *자율(수출자)	수출자/생산자/수입자	수출자	*자율(수출자/생산자) *기관(호주상공회의소: ACCI/호주산업협회: AIG)
증명서식	통일 증명서식	국가별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AK서식	KIN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기관(통일 증명서식) *자율(송품장 신고방식)	서식없음(한국: 권고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국가별 증명서식(한국: 권고서식, 호주: 표준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1년	2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 EU언어	영어	영어/ 한글	영어	영어
사용횟수	1회 사용원칙							12개월 이내 포괄발급可	1회 사용원칙	유효기간 이내 포괄발급可

자료 : 관세청 FTA포털, <http://fta.customs.go.kr> 참고로 연구자가 일부 수정

## 2. 원산지 결정기준

FTA는 협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 특혜를 제공하므로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즉,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기준(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 규정의 본문에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각의 규칙으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기획재정부, 2011)

< 표 2-3 >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종류		
일반 기준	기본 원칙	- 완전생산기준 - 누적기준	- 역내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 충분가공원칙
	분야별 특례	- 최소기준 -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중간재 - 세트물품	- 대체가능물품 - 포장·용기
품목별 기준		- 세번변경기준 - 조합기준	- 부가가치기준 - 선택기준	- 가공공정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무역실무에 관한 지식매뉴얼(FTA활용 핸드북), 2010

## 제4절 선행 연구

직접운송원칙의 위반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학술연구로 몇 차례 연구 되었으며, 일부 학위연구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유형별 위반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유형 중 하나로 직접운송원칙의 위반사례를 분석 하였다.

### 1. 직접운송원칙 위반사례에 관한 선행 연구

이영수와 권순국(2012) 공동연구자는 직접운송원칙의 위반 사례와 상당 사례를 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사전에 이들 위반 유형을 인지하고 정확한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게 하고자 하였다.

한상현(2013) 연구자는 한·EU FTA의 원산지규정 및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토대로 관세청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여 수출입 기업들에게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자유무역협정 요건별 위반사례에 관한 선행 연구

이영수와 권순국(2011) 공동연구자는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 과정의 위반 사례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조준영(2012) 연구자는 FTA의 충족요건을 6가지로 분류(거래당사자 요건, 품목 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요건, 직접운송 요건, 절차적 요건, 원산지검증 요건)하고 각 요건별 이슈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점별 대응전략을 제시 하였다.

서창희(2013) 연구자는 FTA 불복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FTA를

활용하는 무역 주체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고찰 하였다.

윤준웅(2014) 연구자는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위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고찰 하였다.



## 제3장 FTA 직접운송원칙

FTA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물품이 협정국 내에 속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제3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 운송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절 직접운송원칙의 요구 취지

FTA는 양자간 협정이므로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당사국 물품으로 둔갑, 우회 수입되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 간 직항로 또는 직항 운송수단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FTA는 상기 운송상 또는 지리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해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에도 제3국의 세관 통제하 또는 제3국내 소비 제한 등 일부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직접 운송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비당사국 물품이 우회 수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하고 있다.

## 제2절 직접운송원칙 관련 국내외 규정

### 1. FTA 협정문

현재 발효 중인 10개의 자유무역협정은 각 협정문에서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부 협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협정은 제3국을 통과 또는 환적 시 물품의 보관상태 및 공정범위의 한계를 정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표 3-1 >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구분	관련 규정	비고
칠레	제4.12조 (환적 ; Transhipment)	간접 규정
싱가포르	제4.15조 (직접운송 ; Direct Consignment)	직접 규정
EFTA	부속서 I 제1조(정의) 탁송품(Consignment) 부속서 I 제14조 (직접운송 ; Direct Transport)	
ASEAN	부속서 3 제9조 (직접운송 ; Direct Consignment)	
인도	제3.15조 (직접운송 ; Direct Consignment)	
EU	의정서 제1조(정의) 탁송품(Consignment)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 Direct Transport)	
페루	부속서 제3.14조 (직접운송 ; Direct Consignment)	
미국	제6.13조 (통과환적 ; Transit and Transshipment)	간접 규정
터키	제13조 (직접운송 ; Direct Transport)	직접 규정
호주	제3.14조 (직접운송 ; Direct Transport)	직접 규정

자료 : 각 협정문을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

## 2.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보편적인 사항을 국내 법령 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제정법으로서 향후 체결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국내 시행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유광현, 김형철, 신성식, 2011)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15.>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7.15.>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제37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 ① 세관장은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 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이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 ④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3. 관세법

우리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통관 절차, 관세의 부과·징수, 세율 및 품목 분류, 납세자 권리, 운송 수단, 물품 보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의 하나로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 4. 관련 규정 적용의 우선 순위

국내법과 FTA 협정문이 상충되면 협정이 우선되고 협정의 국문과 영문이 상충되면 영문이 우선 적용된다. FTA특례법은 관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up>1)</sup>

### 제3절 FTA 협정별 직접운송의 범위 및 입증서류

각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협정 당사국 간 직접운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유형과 단지 비당사국에서의 물품 통제 및 가공 범위를 규정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유형을 대개 유럽형과 미주형으로 구분하는데 유럽형에는 한·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및 터키와의 FTA가 해당되며 미주형에는 한·칠레 및 미국과의 FTA가 해당된다.

직접운송은 단순한 사실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협정별로 명시하는 입증서류를 제출 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협정별 직접운송 및 직접운송 입증서류와 관련한 협정별 규정을 비교 정리하였다.

#### 1. 협정별 직접운송의 범위

##### 가. 칠레

##### < 표 3-2 > 한·칠레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제4.12조 환적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당사국 영역 밖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
--------------	---

1)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법률 제11612호, 2013.1.1, 일부개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p>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또는 나. 비당사국의 영역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경우</p>
<p>Article 4.12: Transhipment</p>	<p>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by reason of having undergone production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2, if, subsequent to that production, the good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p> <p>(a) undergoes further production or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crating, packing and repack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or</p> <p>(b) does not remain under the control or observation of the customs authority in the territory of the non-Party.</p>

자료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나. 싱가포르

< 표 3-3 > 한·싱가포르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p>제4.15조 직접운송</p>	<p>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p> <p>가.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p> <p>나. 상품이 이 협정상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거나 환적된 경우 수입자가 제 5.9조 다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한 경우</p>
<p>Article 4.15 : Direct Consignment</p>	<p>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of a Party by reason of having undergone production that satisfies the</p>

	<p>requirements of Article 4.2, if, subsequent to that production:</p> <p>(a) The good is not transported directly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r</p> <p>(b) where the good is shipped through or transshipped in the territory of a country that is not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the importer has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paragraph (c) of Article 5.9</p>
--	---

자료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다. EFTA

< 표 3-4 > 한·EFTA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부속서 1 제1조 정의	<p>다. “탁송품” 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p>
Annex I Article 1 Definitions	<p>(a) “consignment” means products, which are either sent simultaneously from one exporter to one consignee or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ir shipment from the exporter to the consigne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ocument, by a single invoice;</p>
부속서 1 제 14 조 직접 운송	<p>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li> <li>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li> </ol>
<p>Annex I Article 14 Direct Transpor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is 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Annex,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Korea and an EFTA State. However, products may be transported through territories of non-parties, provided that they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plitting-up of consignments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During this period the products shall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in the country of transit.</li> <li>2. The importer shall upon request supply the appropriate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to the customs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li> <li>3. For the purpose of application of paragraph 1, originating products may be transported by pipeline across territories other than that of Korea or an EFTA State.</li> </ol>

자료 :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라. ASEAN

< 표 3-5 > 한·ASEAN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p>부속서 3 제9조 직접운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li> </ol>
-------------------------------	--

	<p>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p> <p>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p> <p>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p> <p>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p>
<p>Annex 3 Rule 9 Direct Consignment</p>	<p>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Annex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p> <p>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good of which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third countries, other tha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signed directly, provided that:</p> <p>(a) the transit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p> <p>(b) the good has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p> <p>(c) the good has not undergone any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it in good condition.</p>

자료 :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마. 인도

< 표 3-6 > 한·인도 CEP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p>제3.15조 직접운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li> <li>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li> <li>나.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li> <li>다.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어야 한다.</li> </ol> </li> </ol>
<p>Article 3.15 Direct Consignmen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a good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hich is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li> <li>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good of which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intermediate third countries, other tha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Party and the impor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signed directly, provided tha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the good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li> <li>(b) the good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and</li> <li>(c) the goods have remained under the customs control in the country of transit.</li> </ol> </li> </ol>

자료 : 대한민국정부와 인도 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문

바. EU

< 표 3-7 > 한·EU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p>의정서 제1조 정의</p>	<p>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p>
<p>Protocol Article 1 Definitions</p>	<p>(k)consignment means products which are either sent simultaneously from one exporter to one consignee or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ir shipment from the exporter to the consignee or, in the absence of such a document, by a single invoice;</p>
<p>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p>	<p>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p>
<p>Protocol Article 13 Direct Transport</p>	<p>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are not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p>

자료 :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사. 페루

< 표 3-8 > 한·페루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p>제3.14조 직접운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산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li> <li>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그리고</li> <li>나. 그러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적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li> <li>2)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li> </ol> </li> </ol> </li> </ol>
<p>Article 3.14: Direct Transpor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In order for originating goods to maintain their originating status, the goods shall b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li> <li>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to be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Party to the importing Party: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goods that are transport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and</li> <li>(b) goods whose transport involves transit through one or more non-Parties, with or without trans-shipment or temporary storage in such non-Parties, under control of the customs authority, provided that the goods do no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enter into trade or commerce there; and</li> <li>(ii) undergo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repacking, or any operation required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li> </ol> </li> </ol> </li> </ol>

자료 :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아. 미국

< 표 3-9 > 한·미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p>제6.13조 통과 및 환적</p>	<p>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p> <p>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p> <p>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p>
<p>Article 6.13: Transit and Transshipment</p>	<p>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if the good:</p> <p>(a) undergoes subsequent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the good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or</p> <p>(b) does not remain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ies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p>

자료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자. 터키

< 표 3-10 > 한·터키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p>제13조 직접운송</p>	<p>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p>
----------------------	--

<p>Article 13: Direct Transport</p>	<p>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are not released for free circulation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p>
---	--

자료 : 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차. 호주

< 표 3-11 > 한·호주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p>제3.14조 직접운송</p>	<p>1. 원산지 상품은 제3.1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그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p> <p>2.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p> <p>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p> <p>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p>
<p>Article 3.14: Direct</p>	<p>1. An originating good shall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p>

Transport	<p>3.1, provided that it is directly transported to the importing Party without passing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p> <p>2. An originating good that is transported through the territory of a non-Party shall not retain its originating status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if it:</p> <p>(a) has undergone any subsequent production or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storing, repacking, relabelling, splitting up of loads for transport reasons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or</p> <p>(b) does not remain under the customs control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p>
-----------	--

자료 : 대한민국정부와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 2.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서류

< 표 3-12 > 제3국 경유·환적, 보관 시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 요구서류

FTA	내용	
칠레	관련 규정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장, 제4장, 제5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 제11조(특혜관세 대우의 거부)
	입증 서류	<p>(1) 당사국의 법률에 반하여 당해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요구가 당사국 영역내로 당해 상품이 수입되기 전까지의 운송경로, 모든 선적지 및 환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과 같은 증거서류</p> <p>(2) 당해 상품이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통해서 선적 또는 환적된 경우, 당사국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당해 상품의 수입자가 당해 상품이 비당사</p>

		<p>국에 있는 동안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세관통제서류 사본</p>
	<p>Article XI :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p>	
	<p>(a) if, where contrary to the laws of that Party, the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good is not supported by documentary evidence such as invoices, bills of lading or waybills that indicate the shipping route and all points of shipment and transshipme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 into its territory; and</p> <p>(b) if, where the good is shipped through or transshipped in the territory of a country that is not a Party under the Agreement, the importer of the good does not provide, on the request of that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a copy of the customs control documents that indica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at the goods remained under customs control while in the territory of such country.</p>	
	<p>관련 규정</p>	<p>제5.9조(특혜관세의 거부) 다항</p>
싱가포르	<p>입증 서류</p>	<p>(1)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세관관리문서의 사본</p> <p>(2) 하역·재선적·크레이팅·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비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또는</p> <p>(3) 하역·재선적·크레이팅·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제출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상업서류</p>
	<p>Article 5.9 :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p>	

	<p>(i) a copy of the customs control documents that indicate, to the satisfaction of the importing Party' 's customs administration, that the goods remained under customs control while in the territory of such non-Parties;</p> <p>(ii) any other information given by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such non-Parties or other relevant entities, which evidences that they have not undergone, in such non-Parties,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crating, packing, repack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or</p> <p>(iii) any other information or commercial documents given by the importer which evidence that they have not undergone, in such non-Parties, operation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crating, packing, repack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keep them in good condition; or</p>	
EFTA	관련 규정	부속서1(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14조(직접운송) 2항
	입증 서류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
	Annex 1. Article 14 : Direct Transport	
	The importer shall upon request supply the appropriate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to the customs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mporting Party.	
ASEAN	관련 규정	부속서3 부록1(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
	입증 서류	<p>(1)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p> <p>(2) 원산지증명서</p> <p>(3)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p> <p>(4) 그 밖에 부속서 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p>

		Annex 3. Appendix 1. Rule 19
		(a) a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b) a Certificate of Origin; (c) a copy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n respect of the good; and (d) other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if any, as evidence that the requirements of Rule 9 of Annex 3 are being complied with.
인도	관련 규정	제4.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3항
	입증 서류	(1) 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2) 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관통제 서류의 사본
		Article 4.8 :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 bills of lading or waybills indicating the shipping route and all points of shipment and transshipme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the good; and (b) where the good is shipped through or transhipped in a non-Party, a copy of the customs control documents indicating that the good remained under customs control while in that non-Party.
EU	관련 규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2항
	입증 서류	(1)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2)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3)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rticle 13 : Direct Transport
		(a) evidence of the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trans-shipment or the storage of the originating products in third countries; (b)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passage from the exporting Part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or (c)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페루	관련 규정	제3.14조(직접운송) 3항
	입증 서류	(1)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 그리고 (2) 보관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와 더불어 그 비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
		Article 3.14: Direct Transport
		(a) in the case of transit or trans-shipment, the transportation documents, such as the airway bill, the bill of lading, or the 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ation document, that certify the transport from the country of origin to the importing country, as the case may be; and (b) in the case of storage, the transportation documents, such as the airway bill, the bill of lading, or the 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ation document, that certify the transport from the country of origin to the importing country, as the case may be, as well



	as the documents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y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that authorized this	
미국	관련 규정	<p>(1) 협정문상 직접운송 입증서류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다만, 제6.18조 제3항에 의거, 해당 환적 또는 경유가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함</p> <p>(2) 국내 법령(FTA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름</p>
	입증 서류	<p>(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p> <p>(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p>
터키	관련 규정	제13조(직접운송) 2항
	입증 서류	<p>(1) 비당사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p> <p>(2)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p> <p>(3)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li> <li>-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한 것, 그리고</li> <li>-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li> </ul>
	Article 13: Direct Transport	
	<p>(a) evidence of the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transhipment or the storage of the originating products in non-parties;</p> <p>(b) a single transport document covering the passage from the exporting Party through the country of transit; or</p>	

		(c) a certificat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ransit: (i) giving an exact description of the products; (ii) stating the dates of unloading and reloading of the products and, where applicable, the names of the ships, or the other means of transport used; and (iii) certify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roducts remained in the country of transit.
호주	관련 규정	(1) 협정문상 직접운송 입증서류에 대한 명시규정 없음. 다만, 제3.25조에 의거,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는 등에는 특혜관세가 거부될 수 있음 (2) 국내 법령(FTA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고시 또는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등)에 따름
	입증 서류	(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자료 : 협정문을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

## 제4장 직접운송원칙 위반 사례 및 시사점

### 제1절 직접운송원칙 위반 사례<sup>2)</sup> 및 분석

#### 1. 한·칠레 FTA

##### 가. 칠레산 와인의 프랑스 경유 사례 및 분석

##### (1) 사례

사건 번호	서울세관 이의신청 2007-11호 (2007.06.14)
청구 경위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41370-06-1006752(2006. 6. 16)호 외 2건으로 칠레산 와인 알마비마(ALMAVIVA 0.75L)를 수입하면서 한·칠레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2006년도 수입분은 관세 7.5%, 2007년도 수입분은 5%로 적용하여 수입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7. 4. 4.부터 2007. 4. 10.까지 실시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한·칠레 FTA협정 중 ‘직접운송원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 총 10,837,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함)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7. 6. 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 원산지는 칠레이며, 단지 판매 단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럽 항구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분류되고 환적되어 우리나라에 입항되었을 뿐 통관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는 칠레산이 맞으므로 한·칠레 FTA요건에 해당하므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다.
세관장 답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4.12조의 환적 내용을 살펴보면, 동 물품이 칠레산이 맞다 할

2) 세관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법원 소송 사례에 한 정함

지라도, 당해 물품이 영역 외에서 환적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의 영역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품의 경우에는 특혜관세에 해당하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협정 해석 및 적용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내지 제5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이하 “한칠레 협정 해석에 관한 규칙”이라 함)을 살펴보면 당사국에 당해 상품이 수입되기 전까지의 운송경로, 모든 선적지 및 환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송장,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세관통제서류 사본을 당사국 세관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대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한 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 확인지침을 통하여 제3국(보세구역)에 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을 벗어난 물품 또는 제3국에서 운송을 위해 필요한 작업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운송원칙은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관계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수혜국과 협정당사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로 세워진 원칙으로 일반특혜관세 뿐만 아니라 FTA 특혜관세에서도 널리 적용되는 원칙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등을 철폐하고자 하는 협정으로 일반 물품에 비하여 관세 등에 있어 저세율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주는 협정이다. 따라서 FTA 협정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상기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동 쟁점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재항이 프랑스 소재 LE HAVER로 되어 있으며, 송품장 역시 프랑스 네고시앙인 GRANDS VINS DE GIRONDE 및 JOANNE, SANAMAX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청구인이 직접 비나 알바비마에

서 와인(알마비바)을 수입하지 못하고, 비나 알마비바(Vina Almaviva)에서 네고시양(GRANDS VINS DE GIRONDE 및 JOANNE, SANAMAX)등에 1차 판매된 물품을 동사가 프랑스 네고시양을 통하여 재차 구입(2차 구입)하고 있는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칠레에서 프랑스로 이동하는 물품의 경우 운송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에 의하여 물품이 프랑스로 공급되었으며, 동 물품을 청구인이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유서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시하여 줄 수 없으며, 세관 감시하에 있는 보세 구역에서 분류 및 반출되었다는 자료 역시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단순한 환적 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B/L상 SHIPPER 및 송품장 수출자가 유럽 소재 네고시양(GRANDS VINS DE GIRONDE 등)으로 되어 있으며, 운송 목적의 환적과정 목적이 아니고 판매에 의하여 프랑스에 동 물품이 이동하였으며, 당해 물품이 프랑스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는지 입증 자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4.12조 규정 및 한·칠레 협정 해석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분석

칠레와의 FTA에서 규정하는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작업 범위 내 또는 관리 환경 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로 프랑스 물류창고에 보관되는 동안 협정에서 규정하는 한정된 범위의 작업만이 수행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둘째로 프랑스 세관의 통제 또는 관리 하에 있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칠레산 제재목의 멕시코 경유 사례 및 분석

(1) 사례

<p>사건 번호</p>	<p>서울세관 과세전적부심 2007-83호 (2007.07.30)</p>
<p>사실 관계</p>	<p>청구인은 원목 생산지인 미국, 칠레, 캐나다 등에서 원목, 제재목 등을 수입하여 이를 제재, 가공하여 목재포장재(파렛트, 목상자)와 포장자재(각재, 판재류) 등을 생산한 후 국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p> <p>한·칠레FTA 협정세율(Y1)을 적용받은 물품은 ASERRADEROS ARAUCO SA와 CMPC MADERAS SA로부터 수입하는 제재목(라디에타소나무)과 제재목(기타)로써 수입신고시 원산지과 적출국이 모두 칠레(CL)로 신고되어 있으나 원산지(CL)과 적출국(MX)이 상이한 1건의 수입신고건을 발견하였는바, 동 건은 ASERRADEROS ARAUCO SA에서 수입한 제재목(HSK 4407.10-9000)으로 칠레에서 선적된 후 멕시코에서 환적하여 국내로 수입되어 원산지(CL)과 적출국(MX)이 상이함이 B/L, FIS Scheduling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 되었다.</p>
<p>청구인 주장</p>	<p>통지세관장의 통지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인 라디에타소나무 제재목은 칠레에서 선적한 후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작업에 준하는 형태로 멕시코에서 환적한 것은 사실이나 컨테이너 씬(SEAL)을 전혀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환적한 상태이므로 FTA협정세율 적용세율에 문제가 없으므로 과세 전 통지가 부당하다.</p>
<p>세관장 답변</p>	<p>쟁점물품은 칠레에서 선적된 후 멕시코에서 환적하여 국내로 수입된 건으로써, 한·칠레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환적물품)에 의거 멕시코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환적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나 동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한·칠레FTA 협정세율(Y1) 적용을 배제한다.</p>

(2) 분석

칠레와의 FTA에서 규정하는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작업 범위 내 또는 관리 환경 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컨테이너 씬(seal)을 미 개봉한 것으

로 보아 환적 작업의 범위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두 번째로 멕시코 세관의 통제 또는 관리 하에 있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다.

## 2. 한·ASEAN FTA

### 가. 인도네시아산 주석 피의 싱가포르 경유 사례 및 분석

#### (1) 사례

사건 번호	조심 2011관 0091 (서울행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1구합43607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25851 항소)
처분 개요	<p>청구인은 (주)대우인터내셔널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2009.3.4. 대우 싱가포르 법인(이하 “싱가포르 수출자” 라 한다)으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주석 피 100톤(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0호로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이하 “협정” 이라 한다) 협정 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p> <p>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 소재 PT 00000(0000000) 000사(이하 “인도네시아 수출자” 라 한다)가 싱가포르로 수출하여 싱가포르 내 사설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싱가포르 수출자 명의로 수출되었고,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L/C방식으로 싱가포르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p> <p>처분청은 협정의 직접운송원칙 불충족 가능성이 있다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에 따라 2010.10.19. 청구인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 협정 부속서 3 제9조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00,000,0000, 00000 0,000,000, 00 00,000,0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p>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주석광산 및 광산을 체련하는 체련소가 인도네시아 내 방카섬에 위치해 있고, 방카섬 내

	<p>MUNTOK항은 한국으로 직접 운항하는 정기노선이 없어 싱가포르를 경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p> <p>싱가포르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후 대금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대금지급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며, 인도네시아 수출자로부터 싱가포르 수출자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내수통관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p> <p>따라서, 쟁점물품은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대금결제 및 운송 편의상의 이유로 싱가포르를 경유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 거래·소비·추가공정 등이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선적된 그대로 싱가포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한국으로 수입된 물품이므로,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한 바가 전혀 없다.</p>
<p>처분청 의견</p>	<p>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제2항의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려면, 제3국을 경유하는 이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상의 이유일 것,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또한, 직접운송 예외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지리적·운송요건상 단순경유 여부는 협정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규정한 필수서류인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발급기관의 재수출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도 제출하지 못하였다.</p> <p>2009.1.20. 싱가포르 수출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한 청구인의 신용장 개설 후, 싱가포르 소재 사설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쟁점물품은 2009.2.15. 우리나라로 수출되어 2009.2.21.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수출시 발급된 선하증권상 000은 싱가포르 수출자이고, 수하인은 청구인이며, 송품장 및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는 싱가포르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다.</p> <p>보통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될 경우 생산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상 목적국, 환적국이 기재되어 있어</p>



	<p>제3국의 경유를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을 고려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쟁점물품의 경우 당초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수출시 작성된 선하증권에는 목적국이 싱가포르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싱가포르 수출자와 청구인이 계약한 후 선하증권 및 송품장의 목적국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추가 발행되었다.</p> <p>이는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대비, 계약물량이 조기 생산되거나 안전재고의 활용을 위한 보관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한 것이며, 협정에서 직접운송된 것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제3국 경유로 볼 수 없어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p>
판단	<p>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는 쟁점물품을 경유국인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사후에 구매자를 물색하여 판매하는 보세창고도(BWT) 형태의 거래로서 인도네시아 수출 당사국에서 수출시 B/L의 최종 목적지는 제3국(싱가포르)이며, 제3국에 보관중 최종 구매자가 결정되어 싱가포르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B/L이 발행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입자[(주)0000000]와 선하증권 및 송품장상의 수하인(청구인)이 상이한 점, 제3국인 싱가포르를 수출국으로 보는 경우 직접운송은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 등의 사유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유국인 싱가포르 발급기관의 재수출 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p>

(2) 분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 간주의 경우에 기준하여 검토하여 보면, 직항로가 없어 지선을 이용한 인접 싱가포르 항구에서 선적된 것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에 기인한 환적이므로

로 정당화 된다. 또한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운송 되었으므로 싱가포르에서 거래 또는 소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 작업이나 공정이 수행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 간주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협정문 부속서3 부록1(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 조에는 직접 운송 간주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수입 세관 당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대우가 거부된 것이다.

즉, 직접운송의 사실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또한 증명의 방법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협정세율 적용이 부인될 수 있는 것이다.

#### 나. 통과선하증권 미제출로 인한 직접운송원칙 위반 사례 및 분석

##### (1) 사례

사건 번호	조심 2014관 0106
처분 개요	<p>청구법인은 2010.3.10.~2012.10.29. 000를 000을 경유하여 수입(수입신고번호 000 외 27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고 「관세법」 제73조 및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p> <p>처분청은 2013년 6월 쟁점물품의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000에서 000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의 원산지 규정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1.18.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원 등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p>

	<p>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p>
<p>청구인 주장</p>	<p>제3국 경유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는 수입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상업송장 부분 그리고 그 밖의 증빙서류이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어느 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 규정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가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라면 함께 규정된 통과선하증권도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인데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다.</p> <p>「FTA 특례법」에도 직접운송요건은 규정하고 있지만 통과선하증권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3조와 제3-2-4조에 수입신고수리전에 처분청은 반드시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전에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요구나 보완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협정관세율로 신고수리하였고, 사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과세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건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다.</p> <p>과거 처분청은 2008.9.23.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000 8건에 관하여 기업심사시 원산지증명서 보정 및 원산지증빙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요구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심사를 종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동일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9.2.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이다.</p> <p>통과선하증권은 일반선하증권에 복합운송여부, 환적항, 환적선박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선하증권으로 물품이 운송되더라도 협정이나 법령상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통과선하증권으로 물품이 운송되더라도 복잡한 국제운송 체계에서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p>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곧 직접운송 요건 충족이라는 주장은 협정이나 법령상 상세하게 규정된 직접운송 원칙을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 규정된 통과선하증권은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 필수 제출서류도 아니고 보관의무에 포함된 서류도 아니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하자있는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같은 방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온 것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2008년도에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맞다는 심사 결과를 단순 업무미숙 혹은 착오로 보고 그 이후 2013년도의 쟁점물품 사후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동일 법령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일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만이라도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후 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무역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협정이나 특례법상에도 통과선하증권을 수입자가 보관하고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보완되거나 추가된 사항도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통과선하증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 이를 제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944호, 2013.7.25. 공포 및 시행) 개정시, 해당법령 부칙 제2조에 제한 규정 적용시점을 법 개정 후 최초 수정신고,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결과적으로 과세요건 확정이후 건에 소급하여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례(1993.5.11. 선고, 92누14984)를 보더라도 개정 법령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세법 적용상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

	<p>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 부칙의 규정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 결정·경정을 지칭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령 내용상 오류가 있다. 즉, 「관세법」 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종류의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사항이 없다. 따라서,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규정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무효이다.</p>
<p>처분청 의견</p>	<p>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과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FTA 특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후에 세관장이 원산지 심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실무에서 이와 같은 법령을 반영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서류제출이 없는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P/L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있으며, 쟁점물품 역시 원산지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채 대부분 P/L신고 처리되었다.</p> <p>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이며, 동 규정은 직접운송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해 실제 직접운송간주요건 충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를 감안하여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는 제9조의 직접운송 규정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p> <p>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살펴보면, 2008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입한 000(수입신고번호 000외 7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운</p>

	<p>송서류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이 당해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통보한 것이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한-아세안 FTA」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처분청은 직접운송간주요건 입증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직접운송간주요건 입증서류로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총 8건 중 6건)하자 이를 근거로 당해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통지한 것일 뿐,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이 없어도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다” 는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오해한 것은 납세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p> <p>또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해 2008년 기업심사 통지시 처분청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충족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라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 1」 제13조 제2호에서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수입자의 수입관련 기록 보관의무’ 를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수입자의 운송관련서류 보관의무’ 를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제7항에서는 ‘수입신고수리후 심사’ 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p> <p>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다.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 등을 오해하여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라 할 수 없고 그 귀책사유 또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은 적법·타당하다.</p>
판단	쟁점물품의 경우 전 운송구간이 기재되어 있는 수출국에

	<p>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p> <p>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년도 심사당시 통과선하증권 제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통과선하증권이 없어도 적하목록, 일반 B/L 등만으로도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통관지세관장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이 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p> <p>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p>
--	---

(2) 분석

앞의 글과 동일한 맥락으로 직접운송의 사실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또한 증명의 방법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협정세율 적용이 부인될 수 있다.

3. 한·EU FTA

가. 스페인산 와인의 홍콩 선적 사례 및 분석

(1) 사례

사건 번호	관심 제2012-33호
청구 경위	<p>청구법인은 2007. 7. 31.부터 2008. 9. 27.까지(입항일 기준) 스페인 등에서 선적된 B/L ESBKR804058H01 외 7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일부 물품은 수입신고번호 *****-08-*****U호(2008.8.22) 등으로 수입 통관하였다.</p>

	<p>2008. 10. 17.부터 2010. 8. 4.까지 반송신고번호 ***-10-09-*****호 외 7건으로 최초 반입한 물량에서 수입 통관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홍콩의 ○○○ LTD.사로 반송하였다.</p> <p>2009. 7. 13.부터 2010. 8. 28.까지(입항일 기준) 홍콩에서 선적된 B/L 809207호외 7건을 우리나라에 재반입하고, 2011. 7. 6.부터 2012. 4. 16.까지 수입신고번호 *****-11-*****U호외 13건(이하 ‘청구대상건’ 이라 함)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p> <p>2012. 6. 30. 청구법인은 청구대상건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 관세특례법’ 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처분청에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감액경정을 함께 청구하였다.</p> <p>2012. 8. 28. 처분청은 협정적용신청을 심사한 결과 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조 직접운송에 위배되므로 협정관세를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p> <p>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p>
<p>청구인 주장</p>	<p>청구법인은 스페인 등에서 선적한 B/L번호 ESBKR804058H010외 7건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후 일부는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 국내 와인시장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송신고번호 ***-10-09-*****호외 7건으로 홍콩으로 반송하였다가, B/L번호 809207호외 7건으로 재반입한 후 청구대상건으로 수입신고하였다.</p> <p>또한, 당해물품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단순 환적 및 일시장치된 물품이므로 FTA 관세특례법 고시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인 홍콩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보세구역 미개장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경정청구는 적법하여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p>
<p>세관장 의견</p>	<p>한-EU FTA 협정은 상대국 원산지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당해 원산지상품이라도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경우(중간 경유국에서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일시 환적은 예외적으로 인정)에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운송 규정을 두고 있다.</p> <p>이러한 협정상 의 직접운송규정은 역내운송업 등을 촉진</p>



	<p>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운송과정에서의 일시 환적 또는 일시 장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위배되는 것이며, 비록 원산지가 한·EU FTA 협정에 의한 역내산이라 할지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당해 수입계약과 관련된 운송조건과 인도조건 등이 수입국내에서 종료된 이후, 수입자의 여타 사정 등으로 타국으로의 반송수출한 것은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규정인 일시 환적 또는 일시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따라서 당해물품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p>
판단	<p>쟁점물품은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여 다시 홍콩 수출 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 및 송품장이 발급되어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거부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p>

(2) 분석

유럽국가연합(EU)와의 FTA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 간주의 경우에 기준하여 검토하여 보면, 첫째로 단일의 탁송화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로 스페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와인을 화주의 필요에 의해 홍콩으로 재반출 및 창고 보관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상황에 의한 제3국 환적 또는 창고 보관으로 볼 수 없다. 홍콩 내 유통을 위한 반출 여부 및 홍콩에서 수행된 작업의 범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두 가지 요건을 이미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사례는 원산지 물품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특혜관세 적용이 부인된다.

## 제2절 모의 사례3)

### 1. 운송 구간별 입증서류 제출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였다고 가정하고 직접운송의 입증으로 수출국과 제3국간 운송서류 및 제3국과 수입국간 운송서류 즉, 구간별 운송서류를 제출하여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한 경우 한·싱가포르, EFTA 및 미국과의 FTA에서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FTA 협정문에서는 경유·환적지 등을 포함한 전(全) 운송구간을 모두 명시한 운송서류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칠레, 인도, EU, 페루 및 터키와의 FTA에서는 전(全) 운송구간을 모두 명시한 운송서류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못하면 직접운송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한, 한·ASEAN FTA에서는 특히 통과선하증권(Through B/L)만을 인정하고 있어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못하면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 역내 물품 반출 및 내수 통관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

동일한 역내국 내로 원산지 물품이 자유 반출 및 내수 통관된 경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경우에는 최초 역내국에서 발행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물품이 반출 및 내수 통관된 역내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C/O)를 발행하였다면 기존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고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 각 협정문을 근거로 연구자가 비교하여 사례를 모의함

하지만 유럽국가연합(EU)의 경우, 타 역내국에서 원산지 물품이 자유 반출 및 내수 통관된 경우 최초 역내국을 원산지로 하는 지위를 상실하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하다.

### 3. 제3국 보세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

대륙별 보세물류창고를 설치하고 해당 물류창고에 원산지 물품을 보관하다가 구매자가 확정되면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가정할 경우, 한·싱가포르, EFTA 및 미국과의 FTA는 기존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되 한·칠레, 인도, EU, 페루 및 터키와의 FTA는 원산지 지위를 부인하고 협정세율의 적용이 불가할 수 있다.

한·ASEAN FTA의 경우는 제3국이 역내국에 있고 해당 제3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가 발행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싱가포르, EFTA 및 미국 FTA의 경우는 협정문에서 세관 통제 및 추가 가공공정 비수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칠레, 인도, EU, 페루 및 터키 FTA는 단일 탁송화물이거나 경유국 통과를 포함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해 협정국 간 운송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비당사국인 3국과 수입국 간 운송은 단일 탁송화물의 구성 및 단일 운송서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하게 된다.

## 제3절 시사점

### 1. 단순 사실관계의 부인 및 입증서류의 필수 제출

직접운송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각 협정에서는 직접운송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고, 해당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송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2.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서류의 사전 확인

자유무역협정별로 직접운송의 입증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서류 구비는 직접운송 불인정 및 관세 추징의 위험이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별로 직접운송 입증서류가 일부 상이하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의 요구서류를 보면 경유 또는 환적을 포함한 전(全) 운송경로가 모두 명시된 운송관련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비당사국 세관의 원산지 물품 통제에 관한 서류 및 추가 가공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요구하기도 한다.

< 표 4-1 > 제3국 경유·환적, 보관 시 협정별 직접운송 입증서류 비교<sup>4)</sup>

FTA	전(全) 운송경로 명시 서류	제3국 세관 통제서류	추가 가공 및 작업 비수행 입증 서류	기타
칠레	○ (송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	-	-
싱가 포르	-	○	○ (관세행정기관 제공정보 및 수입자 제출서류)	-

4) 각 협정문 규정 내용에 한정, 국내 관련법령상 규정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EFTA	-	○ (총족에 관한 적절한 증거)	○ (총족에 관한 적절한 증거)	-
ASEAN	○ (통과선하증권)	-	-	· 원산지증명서 · 상업송장 사본 · 그밖의 증빙서류
인도	○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	-	-
EU	○ (단일 운송서류)	-	○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제품설명 및 상태에 관한 서류)	· 환적 또는 보관 관련상황의 증거
페루	○ (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결합운송문서)	○ (제3국 보관의 경우에 한함)	-	-
미국	-	-	-	-
터키	○ (단일 운송서류)	-	○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제품설명 및 상태에 관한 서류)	· 환적 또는 보관 관련상황의 증거

자료 : 협정문을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

### 3. 운송 경로의 사전 확인 및 입증서류 사전 구비

물품의 선적은 수출자가 수행하므로 특히, 정형거래조건이 C 또는 D 조건인 경우는 수출자가 운송 수단 및 경로 수배에 대한 전 과정을 수행하므로 수입자가 직접 운송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수입자 세관당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또는 입증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선적이 완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직접운송 여부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이 FTA 활용 및 특혜 관세를 적용 받고자 한다면 계약 당시부터 원산지 물품의 운송 경로를 사전 협의 및 정보 공개하고, 수출자는 해당 경로를 입증할 서류를 선적 당시부터 구비하고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입수한 서류를 보관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 4. 보세창고도 거래(BWT)의 직접운송 인정 협정여부 확인

보세창고도 거래(BWT)는 구매자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특정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보관하다가 구매자가 확정되면 해당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선적하는 형태의 거래로 대륙별 물류거점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FTA에서 보세창고도 거래가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협정별 협정문의 직접운송 규정과 직접운송 입증서류 규정을 동시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직접운송 규정에는 다소 단순하게 규정된 사항이 직접운송 입증서류 규정을 통해 그 범위가 명확해 지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각 협정별 직접운송 규정과 직접운송 입증서류 규정을 비교 정리한 것으로 두 가지 규정에서 모두 보세창고도 거래를 인정한 협정의 경우, 해당 거래도 직접운송으로 간주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ASEAN FTA의 경우 직접운송 입증서류 규정에서 통과선하증권의 필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보세창고도 거래를 불인정 하지만 보세창고가 타 역내국에 소재한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를 활용함으로써 보세창고도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 표 4-2 > 협정별 직접운송 및 직접운송 입증서류 규정상 BWT 인정 여부

FTA	직접운송 규정상	직접운송 입증서류 규정상
칠레	인정 (제4.12조 : 비당사국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 비수행에 대해서만 제한)	불인정 (통일규칙 제11조 : 모든 운송경로가 표시된 서류 요구)
싱가포르	인정 (제4.15조 : 비당사국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 비수행에 대해서만 제한)	인정 (제5.9조 : 경유국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 비수행 입증서류 요구)
EFTA	인정 (부속서1 제14조 : 비당사국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 비수행만 제한, 탁송품의 분리 인정)	인정 (제14조 : 경유국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 비수행 증거)
ASEAN	불인정 (부속서3 제9조 : 지리적 또는 운송 목적의 경유 인정,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 불인정)	불인정 (부속서3 부록1 제19조 : 통과선하증권 요구) 다만, 타역내국 소재 물류창고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 제출시 인정
인도	불인정 (제3.15조 :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 불인정)	불인정 (제4.8조 : 모든 운송경로가 표시된 서류 요구)
EU	불인정 (의정서 제13조 1항 : 단일 탁송화물만 환적·일시보관 인정)	불인정 (의정서 제13조 2항: 경유국 통과를 다루는 단일 운송서류 요구)
페루	불인정 (제3.14조 1,2항 : 비당사국에서의 거래 또는 교역 불인정)	불인정 (제3.14조 3항 : 모든 운송경로가 표시된 서류 요구)
미국	인정 (제6.13조 : 비당사국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 비수행에 대해서만 제한)	인정 (불인정에 관한 명시 규정 없음)
터키	불인정 (제13조 1항 : 단일 탁송화물만 환적·일시보관 인정)	불인정 (제13조 2항: 경유국 통과를 다루는 단일 운송서류 요구)

자료 : 협정문을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

## 5. 협정별 직접운송 요건의 동시 충족

각 협정에서는 직접운송 및 직접운송 간주의 요건에 대해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관 당국의 직접운송 인정 사례를 보면 해당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몇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 하거나 또는 하나만 미충족 하더라도 직접 운송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모든 요건에 대한 인지와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 요약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 간에 직접운송 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제3국을 우회 수입할 경우 원산지 물품의 동일성 확보가 어렵고 비원산지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운송 경로 및 운송 수단 수배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직접운송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부득이하게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때 물품의 상태 보존 작업, 하역, 재선적 작업 등 외 다른 공정이 수행되지 않아야 하고 제3국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관리하에 물품이 있어야만 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직접운송 간주의 경우로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한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협정에서는 입증 서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운송 및 특혜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직접운송 되었다는 단순 사실만으로 특혜세율을 적용한 경우 사후검증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여 특혜세율을 적용하려는 계약 당사자들은 반드시 해당 협정문을 확인하고 운송 경로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입증 서류를 사전에 보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이 보세창고도 거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세창고가 소재한 제3국에서 세관 통제하 및 추가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운송으로 간주되지 않고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능 대상 협정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 해당 경우의 요건들은 모두가 동시에 충족 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일부 요건만 충족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직접운송원칙 위반사례들은 정식 불복기관에 정식 불복절차를 통하여 제기 및 판단된 사례들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분석 하였다. 따라서 공개된 심사 또는 심판 사례가 극히 한정적이고 특정 협정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확인 가능한 위반 사례 건수가 적어 선행 연구에서 몇 차례 언급되기도 하였다.

판단의 신뢰성이나 공신력을 이유로, 일선 세관이나 관세청 민원계시관에 공개된 상담사례와 연구자 직업의 특성상 현업에서 답변하는 상담사례는 모두 배제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상담사례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직접운송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회신의 일관성을 검토한다면 보다 더 풍부한 가이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를 포함하여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 중인 FTA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FTA의 양적인 확대는 그만큼 양적인 위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가 재차 연구 될 수 있다면 협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의 범위와 입증서류가 보다 더 명확해 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 < 참고 문헌 >

### 1. 국내문헌

- 윤준용(2014), “FTA 원산지검증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PSR 위반요인의 유형별 사례분석)”,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논문, p.26-28
- 한상현(2013), “한·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15(2), pp.207-232
- 서창희(2013),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불복사례 연구(상품무역의 원산지관련규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통상법무학과, 석사학위논문, p.61-69
- 조준영(2012), “FTA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충족요건별 대응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p.86-90
- 정재완(2012),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 13(4), pp.661-78
- 이영수·권순국(2012),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4(4), pp.387-407
- 이영수·권순국(2011),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한국무역상무학회, 49, pp.493-518
- 유광현·김형철·신성식(2011), “한미FTA 원산지검증 절차를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 12(1), pp.191

## 2. 단행본

이영달(2011),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p.16-37

기획재정부(2010), “무역실무에 관한 지식매뉴얼(FTA활용핸드북)”, p.21

## 3. 법률 및 협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1.1,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8호, 2014.12.11.,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14.5.26. , 타법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03호, 2014.11.20 일부개정]

대한민국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인도 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 4.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결정서 및 법원 판례

서울세관 이의신청 2007-11호 (2007.06.14)

서울세관 과세전적부심 2007-83호 (2007.07.30)

조심 2011관 0091

서울행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1구합436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25851 판결

조심 2014관 0106

관심 제2012-33호

#### 5. 참고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관세청FTA포털 <http://fta.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www.origin.or.kr>

